



---

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

---

의안번호

제13호

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승필 의원 등 7명
제출연월일	2026. 2. 9.

#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3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2. 9.

대표발의자: 서승필

공동발의자: 서 원, 조배식,  
민병춘, 홍태의,  
김종욱, 이태모

## 1. 제안이유

자율방범대의 역할과 방법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, 시장이 요청하는 방법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원의 활동 여건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및 자율방범활동의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안 제4조)
- 나. 방법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(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 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 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 제3조
- 나. 기타사항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 - 조례안예고: 2026. 2. 9. ~ 2. 14. (5일간)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제3조로 하며,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논산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대원”(이하 “대원”라 한다)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(이하 “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·보호 및 아동·노약자 등의 안전지원
3. 재난·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
4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5.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6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3조(중전의 제2조) 중 “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”를 “연합대”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3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합대(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연합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논산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4조)의 제목 “(지원)”을 “(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방범 활동”을 “방범활동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재해복구, 실종자 수색,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이 요청하는  
방범활동에 따른 수당

제7조(중전의 제5조)제3항 및 제4항 중 “논산경찰서장”을 각각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6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	서승필 의원 등 7명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“자율방범대”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논산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논산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</u></li> <li><u>2. “자율방범대원”(이하 “대원”라 한다)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</u></li> <li><u>3. “자율방범연합대”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</u></li> </ol>
<p><u>제2조(시장의 책무) 논산시장(이</u></p>	<p><u>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</u></p>

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3조(지원 절차 등) ①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

-----  
-----  
----- 연합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(이하 “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·보호 및 아동·노약자 등의 안전지원
3. 재난·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
4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5.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6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5조(지원 절차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

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(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논산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)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(또는 연합대)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방법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

2. ~ 6.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연합대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경찰서장 -----  
-----.

제6조(지원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방법 활동 -----  
--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재해복구, 실종자 수색,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이 요청하는 방법 활동에 따른 수당

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조(지도 및 감독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자율방범대(또는 연합대)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해 논산경찰서장에게 정기·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자율방범대(또는 연합대)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논산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산)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(또는 연합대)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7조 ~ 제9조 (생략)

[별지 제1호 서식]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도 및 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경찰서장 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--- 경찰서장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정산) 제6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 ~ 제11조 (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[별지 제1호 서식]

[별지 제1호서식]

(20 . [ 반(분)기] 지원금  
신청서)

(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)

(단위: 원)

1. 사업명 :
2. 사업내용 :  
※기간, 장소, 사업내용 등 기재
3. 추진계획 :
4.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항목	계	신청금	산출기조
계				

「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[별지 제1호서식]

(20 . [ 반(분)기] 지원금  
신청서)

(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)

(단위: 원)

1. 사업명 :
2. 사업내용 :  
※기간, 장소, 사업내용 등 기재
3. 추진계획 :
4.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항목	계	신청금	산출기조
계				

「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**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2조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  2.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  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  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3조(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  2.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  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  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